

창원지방법원 2024. 7. 26 선고 2023나108924 판결 [계약금반환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창원지방법원 2024. 7. 26 선고 2023나108924 판결

창원지방법원 2023. 6. 16 선고 2020가단125460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겸 피항소인

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율, 담당변호사 박종현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형란

피고, 피항소인 겸 항소인

주식회사 B

변론종결 2024. 6. 14.

판결선고 2024. 7. 26.

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. 6. 16. 선고 2020가단125460 판결

주문

1.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

원고에게 103,17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1. 19.부터 2024. 7. 26.까지는 연 5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2.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3.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4.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138,17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가. 원고

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03,17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1. 19.부터 2023. 6. 16.까지는 연 5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피고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7면의 나.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

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나. 부가가치세 반환 청구

1) 원고의 주장 요지

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, 이후 피고는 부가가치세 103,170,000원을 환급받았음에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, 위 약정에 기하여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103,17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. 설령 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예비적으로 위 103,170,000원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한다.

2) 판단

가) 약정금 청구에 관하여

이 사건 계약해지 합의서(갑 제9호증) 제1항에 "피고가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과정에 원고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"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,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은 없고, 달리 원 ·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나)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

갑 제10,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8. 3. 19. 31,000,000원, 2018. 4. 23. 72,219,000원 합계 103,219,000원을 지급한 사실, 피고는 2018. 1.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 관한 103,170,000원(= 81,170,000원 + 22,000,000원)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3,170,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.

원고가 위 부가가치세 103,170,000원을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았다면 그 환급세액은 실질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(대법원 2006. 4. 28. 선고 2004다16976 판결

등 참조),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았다는 사정을 찾기 어렵고, 오히려 제1심 법원의 김해세무서에 대한 2022. 12. 27.자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피고가 위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해제를 사유로 하여 위 발행을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103,170,000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3,17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1.

1. 19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. 7. 26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[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(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)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]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,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,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영훈, 판사 이진석, 판사 김상욱